

의안번호	25721
의 퇴 인	홍영표의원
회 답 일	2023. 09. 15.
추 계 번호	23D40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 등을 위하여 운전자에 대한 약물의 영향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시나리오에 따라 2025년 1,000만원~3,100만원, 2029년 1,100만원~3,4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5,400만원~1억 6,200만원(연평균 1,100만원~3,2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시나리오1) 적발건수의 10배수 검사							
운전자에 대한 약물영향 측정(안 제45조제2항 신설)	10	11	11	11	11	54	11
(시나리오2) 적발건수의 30배수 검사							
운전자에 대한 약물영향 측정(안 제45조제2항 신설)	31	32	32	33	34	162	32

- 주: 1.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2. 운전자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약물영향 측정(안 제45조제2항 신설)은 재량규정 재정수반요인으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하고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3.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 대하여 약물의 영향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간이시약검사를 실시하고 운전자가 약물복용으로 적발되는 건수는 음주운전적발 건수 중 인구 대비 마약사범 비율(최근 3년 연평균 0.023%)만큼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4. 운전자가 약물복용으로 적발되는 건수 대비 간이시약검사 건수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추계하며 시나리오1은 10배수, 시나리오2는 30배수
 5.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자의 약물복용 여부를 검사하는 시약의 단가는 2023년 기준 35,000원이고 본 추계에서는 추계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5조제2항 신설(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전자에 대해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 정도를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함	재량규정
2	안 제45조제3항 신설(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안 제45조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고,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5조제2항 신설(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	
2	안 제45조제3항 신설(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X	재측정 방법 등을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고 있고, 약물 영향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의 수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불가능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 대하여 약물의 영향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간이시약검사를 실시하고, 운전자가 약물복용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음주운전적발 건수 중 인구 대비 마약사범 비율만큼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운전자가 약물복용으로 적발되는 건수 대비 간이시약검사 건수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추계하며 시나리오1은 10배수, 시나리오2는 30배수 적용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¹⁾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운전자에 대한 약물영향 측정(안 제45조제2항 신설)

- 개정안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 등을 위하여 운전자에 대한 약물의 영향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경찰청에 따르면, 현행법 상 음주운전 단속 중 약물복용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있는 경우 검찰에 마약 등의 약물복용 시약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경찰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약물복용 간이시약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음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3.4)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소비자물가상승률(CPI)	3.5%	2.7%	2.4%	2.1%	2.0%	2.0%

□ 본 추계에서는 운전자가 약물복용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음주운전적발 건수 중 인구 대비 마약사범 비율만큼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적발 건수 대비 간이시약검사 건수에 대한 시나리오(시나리오1: 10배수, 시나리오2: 30배수)를 적용

-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어 본 추계에서는 최근 3년(2020~2022년) 연평균 121,238건이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최근 3년(2020~2022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대비 마약사범의 비율은 연평균 0.023%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자료: 2020년 51,829,023명, 2021년 51,638,809명, 2022년 51,439,038명
 - 경찰청의 마약사범 현황 자료: 2020년 12,209명, 2021년 10,626명, 2022년 12,387명

[표 2] 약물복용 간이시약검사 건수 추정: 2025~2029년

(단위: 건)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운전자 약물복용 적발 건수(a)		28	28	28	28	28
운전자 약물복용 간이시약검사 건수	시나리오1(=a×10배)	280	280	280	280	280
	시나리오2(=a×30배)	840	840	840	840	84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자의 약물복용 여부를 검사하는 시약의 단가는 2023년 기준 35,000원이고 추계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표 3] 운전자 약물복용 검사 시약단가 추정: 2025~2029년

(단위: 원)

	2025	2026	2027	2028	2029
약물복용 검사 시약단가	36,808	37,581	38,332	39,099	39,88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 등을 위하여 운전자에 대한 약물의 영향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시나리오에 따라 2025년 1,000만원~3,100만원, 2029년 1,100만원~3,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운전자 약물복용 간이시약검사에 따른 소요비용 추계: 2025~2029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운전자 약물복용 간이시약검사 건수 (A, 건)	시나리오1	280	280	280	280	280
	시나리오2	840	840	840	840	840
약물복용 검사 시약단가(B, 원)		36,808	37,581	38,332	39,099	39,881
추가재정소요 (=A×B, 백만원)	시나리오1	10	11	11	11	11
	시나리오2	31	32	32	33	34

IV. 부대의견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본 추계결과는 운전자가 약물복용으로 적발되는 건수를 음주운전적발 건수 중 인구 대비 마약사범 비율만큼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적발 건수 대비 간이시약검사 건수에 대한 시나리오(시나리오1: 10배수, 시나리오2: 30배수)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오명희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